

## 부록

---

- 한국동남아학회 회칙
- 학회지 동남아시아연구 간행규정
  - 〈별표 1〉 동남아시아연구 발간일정
  - 〈별지서식 1호〉 동남아시아연구 논문게재신청서
  - 〈별지서식 2호〉 논문심사평가서
  - 〈별지서식 3호〉 논문재심평가서
- 원고집필원칙
- 한국동남아학회 연구윤리 규정



## 한국동남아학회 회칙

###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동남아학회(이하에서는 본회)라 하고, 영문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로 표기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는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동남아시아와 관련되는 분야의 학술연구, 발표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동남아시아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와 조사
2.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3. 회지 및 관련 학술서적의 간행
4.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들과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아래에 규정한 자격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과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동남아와 관련된 분야의 강의,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 의 승인

을 받은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거나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회의 연구활동에 관심을 표명하는 국내외의 개인 및 기관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명예회원 및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5. 기관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표결할 권리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회원은 임원으로 피선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의 의무를 상당한 기간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다.

### 제3장 임 원

제 8 조 (회장의 임기) 본회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제 9 조 (회장 및 감사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은 전임회장의 임기 종료 전 1년 이내에 개최하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후보는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회장과 감사는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한 자가 회장으로 선출된다.

제10조 (회장의 권한) 회장은 아래의 권한을 갖는다.

1.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관례상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기타 사항을 관장한다.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임기) 본회는 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2인의 부회장, 20인 이하의 상임이사, 그리고 40인 이하의 이사의 임원을 두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 및 감사의 직무) 임원은 아래의 직무를 행한다.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권한을 대행한다. 또한 회장은 부회장에게 회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을 도와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 편집, 국제, 기타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각 1-5인씩 위촉할 수 있다.
3. 감사는 재정을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고문) 본 회의 운영을 협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고문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명예회장) 전임회장은 임기 종료 후 2년 간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어 학회의 발전을 지원한다.

#### 제4장 회 의

제15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1회 개최하고, 상임이사회의 결정,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40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본 회의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단순 다수로 의결한다.

제18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발의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출판에 관한 사항
4. 각종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입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7. 기타 회무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상임이사 및 상임 이사회) ① 회장은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위촉하며 상임이사는 총무, 연구, 편집, 국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20조(편집 및 기타 위원회) ① 본 회의 학회지 논문심사와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기타 필요시에는 회장이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편집 및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은 회장 및 관련 이사가 제정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승인 받는 즉시 발효된다.

## 제5장 사 업

제21조(학회지 발간) 본회는 연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학회지를 발간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제22조(연구발표회 개최) 본회는 연 3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진다.

연구발표회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제23조(기타 사업) 본회의 목적에 관련하여 행하는 정기, 부정기의

각종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 성격에 따라, 상임이사회,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찬

조금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회비, 찬조금, 기타 지원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예산과 회계) 회장은 본회의 예산작성 및 집행권을 갖는다.

회계연도는 제15조에 의거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고 차기 정기총회전일에 종료된다. 회장은 회계연도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회칙개정

제26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

여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 1 조(준용) 이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1991년 6월 29일)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조 (창립회원) 창립회원은 제5조에서 정한 정회원의 추천과 이  
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1999년 10월 23일)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2001년 6월 15일)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2009년 6월 19일)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2012년 5월 11일)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 21 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회지 『동남아시아연구』 간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동남아학회(이하 본학회)에서 간행하는 『동남아시아연구』(영문명 The Southeast Asian Review, 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심사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집위원회)

- 1) 학회지의 심사, 편집, 출판,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학회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편집위원 5-10인으로 구성하며, 편집간사 1인을 둔다.
- 3) 편집위원장은 본학회의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를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 4) 편집위원 선정기준은 지역별, 학문별 분야의 안배를 고려한다. 이때 편집위원장이 속한 대학을 제외하고 2인 이상 같은 대학에서 선임되지 않도록 한다.
- 5)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간행업무를 주관하며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 6)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간행과 관련한 제반 규정의 신설 및 수정,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결과의 판정,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 7) 편집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편집위원회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8)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 1) 편집위원회는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2)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연구대상지역과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대학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최대한 배제한다.
- 3) 심사위원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연구소의 상임연구원 이상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해당 연구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연구능력이 탁월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편집규정)

- 1) 학회지는 매년 1호(2월 28일), 2호(5월 31일), 3호(8월 31일), 4호(11월 30일) 연 4회에 걸쳐 발간한다.
- 2)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연구로 국한하며, 연구논문, 번역, 서평, 연구단편(research note) 등 학술적 성격이 분명한 글이어야 한다. 타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 간의 비교연구도 게재 가능하다.
- 3)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이미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4) 본 학회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제출될 수 있다. 다만, 1호 심사대상 논문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2호 심사대상 논문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3호 심사대상 논문은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4호 심사대상 논문은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에 한한다.
- 5) 원고 제출 시 필자는 논문게재신청서(별지서식 1호)와 영문

또는 국문 초록이 포함된 원고를 전자메일이나 디스켓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원고집필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집필원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6)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국어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초록, 영어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어 초록을 첨부한다.
- 7) 원고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연구논문(번역, 연구단편 포함)의 경우 200자 원고지 200매 이내, 서평의 경우 50매 이내이다. 편집위원회는 규정 분량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간행비용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심사과정)

제출된 논문은 다음 4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학회지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단계: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즉시 제출된 논문과 논문게재 신청서가 학회지 편집규정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10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2단계: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평가서(별지서식 2호)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심사평가서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에도 심사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3단계: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결과를 즉시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논문 투고자는 수정 논문을 지정된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한 수정 여부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하며,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원심자에게 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다.

4단계: 1차 심사와 재심이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제6조의 심사결과 판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논문 게재 여부를 확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심사결과 판정)

- 1) 심사위원은 심사의 결과를 ‘게재 가(A)’, ‘수정후 게재(B)’, ‘수정후 재심(C)’, ‘게재 불가(D)’로 판정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서를 수합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을 내린다. 일반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심사결과 |   |   | 판 정        |
|------|---|---|------------|
| A    | A | A | 수정 없이 게재   |
| A    | A | B | 수정 없이 게재   |
| A    | A | C | 부분 수정 후 게재 |
| A    | A | D | 부분 수정 후 게재 |
| A    | B | B | 부분 수정 후 게재 |
| A    | B | C | 부분 수정 후 게재 |
| A    | B | D | 부분 수정 후 게재 |
| B    | B | B | 부분 수정 후 게재 |
| B    | B | C | 부분 수정 후 게재 |

|   |   |   |             |
|---|---|---|-------------|
| B | B | D | 부분 수정 후 게재  |
| A | C | C | 전면 수정 후 재심  |
| A | C | D |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
| B | C | C | 전면 수정 후 재심  |
| B | C | D |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
| C | C | C | 전면 수정 후 재심  |
| C | C | D | 전면 수정 후 재심  |
| A | D | D | 게재 불가       |
| B | D | D | 게재 불가       |
| C | D | D | 게재 불가       |
| D | D | D | 게재 불가       |

\* 재심 또는 게재 불가 여부를 결정

- 3) 심사위원과 관련된 개인 정보와 심사결과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6조의2(편집위원의 투고)

- 1) 편집위원은 투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 또한 제5조와 제6조에 정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결과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논문 게재료)

- 1)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경우 투고자는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가 거부된다.
- 2) 전임의 경우 10만 원의 기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이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본 게재료에 10만 원을 추가하여 2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비전임의 경우 그 논문이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한해 10만 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만약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한 원고 매수가 20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는 초과된 매 10매마다 5만 원씩의 간행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저작권) 논문의 게재는 학회의 논문 사용 및 공개에 필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 칙 (2005.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해왔던 이전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2005년 11월 2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전의 간행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제반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 칙 (2007. 8. 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및 제6조의 변경내용은 학회지 제17권 2호 (2007년 8월 31일 발간)에 투고된 논문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09. 6. 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9. 22)**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11. 1)

제 4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lt;별표 1&gt; 『동남아시아연구』 발간일정

|        | 계제신청마감 | 원고제출마감  | 학회지발간   |
|--------|--------|---------|---------|
| 각권 제1호 | 12월 1일 | 12월 31일 | 2월 28일  |
| 각권 제2호 | 3월 1일  | 3월 31일  | 5월 31일  |
| 각권 제3호 | 6월 1일  | 6월 30일  | 8월 31일  |
| 각권 제4호 | 9월 1일  | 9월 30일  | 11월 30일 |



<별지서식 1호>

『동남아시아연구』 논문게재신청서

|            |                  |               |  |
|------------|------------------|---------------|--|
| 성 명        | 한 글<br>(한자)      | 영 어           |  |
| 소 속        |                  | 최종학위          |  |
| 직 위        |                  | 전 공           |  |
| 연 락 처      | 주소<br><br>(우)    |               |  |
|            | 전화 ( )<br>E-mail | 팩스 ( )<br>휴대폰 |  |
| 논 문<br>제 목 | 한글<br>영어/외국어     |               |  |
| 논 문<br>개 요 |                  |               |  |

<별지서식 2호>

『동남아시아연구』 논문심사평가서

|      |         |            |            |           |
|------|---------|------------|------------|-----------|
| 논문제목 |         |            |            |           |
| 심사자  | 성명:     |            | 소속:        |           |
| 심사판정 | 게재가 ( )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 ) | 게재 불가 ( ) |
| 심사평  |         |            |            |           |
|      |         |            |            |           |

<별지서식 3호>

『동남아시아연구』 논문재심평가서

|      |         |            |            |           |
|------|---------|------------|------------|-----------|
| 논문제목 |         |            |            |           |
| 심사자  | 성명:     |            | 소속:        |           |
| 심사판정 | 게재가 ( )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 ) | 게재 불가 ( ) |
| 심사평  |         |            |            |           |
|      |         |            |            |           |

## 원고집필원칙

### I.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 성격> : 제출된 원고는 학술적인 성격이 뚜렷한 글로서 일체의 표절이 행해지지 않은 독창성을 지녀야 하며, 단행본이나 타 학술지에서 이미 출판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2. <원고 분량>
  - (1) 연구논문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200매 이내이며, 서평은 50매 이내이다.
  - (2) 원고의 분량이 20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는 초과분의 간행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 분량이 250매를 초과할 수 없다.
3. <원고 구성> : 원고는 표지, 본문 및 각주, 참고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국문 원고의 경우에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의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고, 주제어(key words)를 표기한다.
  - (1) <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기고자의 이름, 소속,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주소,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감사의 말을 포함한다.
  - (2)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I, 1, (1)”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3)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짧게 한다. 5행(200자 원고지 1장)을 초과하는 각주는 본문 중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한다. 각주는 본문 중의 적당한 곳(구두점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 해당 면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 (4)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후 계속해서 “참고문헌”이란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 또는 “<그림 1> ...”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한글로 작성되지 않는 표나 그림(삽화, 사진 포함)의 경우는 직접 마스터를 뜰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 (6) <영문초록>은 제목과 필자 명을 포함하며, 요약문은 40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작성한다.
4. <필자의 익명성> : 심사시 필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자의 이름을 별도의 표지에만 적으며,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필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예: “줄고 xxx” 혹은 “줄저 yyy”
  5. <한글사용> :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먼저 한글로 쓰고 괄호 속에 한자(漢字)를 부기하기로 한다.  
예: 종족집단(種族集團)
  6. <외래용어> : 통일된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번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지역연구(Area Studies)

7. <외국인명> : 외국인명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표기한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 규정이 없는 외국인명의 경우는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야노토루(失野暢), 세데스(George Coedes)
8. <외국 지명> : 외국지명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표기한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 규정이 없는 외국 지명의 경우는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양곤(Yangon), 쿤밍(Kunming)
9. <외국기관, 단체 및 정당의 명칭> :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명칭은 통용되는 번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예: 국제연합, 아세안 등)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본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명, 그리고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될 때는 한글 번역명 혹은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아웅산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민족연합(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미얀마 군부에게 집중되고 있다. NLD는 지난 1990년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바 있다.”
10. <영문 원고에서의 한글의 영문 표기> : 영문으로 제출되는 원고의 한글 고유명사나 특수한 개념을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문화관광부 고시 2000년 8호의 새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야 한다.  
예: 제주도 → Jeju-do, 불국사 → Bulguksa
11. <출전의 표시> :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으로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

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전표시 요령을 참고한다.

## II. 출전표시 요령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姓)(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등의 인명은 성명), 출판년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ibid.”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구체적인 예>
  - (1) 저자명이 본문의 글에 나오는 경우: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년도를 표기한다.  
 예: “... 홍길동(1998)은 ...”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姓)과 출판년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 무어(Moore 1966)는 ...”
  - (2) 저자명이 본문의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인과 일본인 등의 인명은 성명)과 출판년도를 괄호 속에 표기하여, 이것을 구두점 앞에 둔다.  
 예: “...(홍길동 1992),” “...(Moore 1996).” “...(毛澤東 1962).”
  - (3) 면수는 출판년도 다음에 콜론을 하고 한 칸을 띄고 숫자만 표기한다.

예: “... Evans(1997: 56)” 또는 “(홍길동 1994: 12-14)”

-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 또는 “et al.”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홍길동 외 1991: 35-38)” 또는 “(Evans et al. 1992: 15-18)”

- (5)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 각기 다른 저자의 문헌들인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같은 저자의 다른 문헌인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한다.

예: “... (홍길동 1990: 18; Cumings 1981: 72; Weiner 1967: 99)”  
또는 “... (홍길동 1965, 1967)”

- (6)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하는 경우: 지명, 발행년/월/일(월간지의 경우 발행년/월),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 (중앙일보 1993/04/08, p.5) 혹은 (신동아 2003/02, p.233)”

- (7) 간행예정인 원고: “미간”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년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아예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그 자리에 “n.d.”를 쓴다.

예: “... Pye(forthcoming), 또는 홍길동(미간), Coleman(n.d.) ...”

- (8) 기관저자일 경우: 식별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 (외교안보연구원 1992) ...”



### Ⅲ.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지 않는 동양어문헌(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버마어, 크메르어 등), 로마자로 표기되는 문헌(구미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한다.
3. 저자명은 성을 기준으로 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단, 중국어와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로 표기하여 한자음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할 수 있다.
4.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 또는 저서명, 출판지와 출판사의 순서로 기재한다. 각 항목 사이는 마침표로 구분하되, 출판지명과 출판사명 사이는 콜론(:)으로 구분한다.

예: 박이문·홍길동. 1997.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서울: 당대.

Wolf, Eric R. 1982. *Europe and the People Without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5.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6. 각각의 문헌은 아래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인도·유럽어인 경우는 이탤릭체(*The Coming of...*)로, 한글, 일본어, 중국어, 한문인 경우는 이중격쇠(『...』)로 표시한다.
- 각 문헌의 첫줄은 다섯 칸 내어 쓴다.

(1) 저서

① 저자가 1인인 경우:

고인돌. 1993. 『변화하는 동남아시아』. 서울: 민음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 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홍길동·허생·홍부. 1995. 『조선시대 소설 인물고』.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Evans, Grant, Christopher Hutton and Kuah Khun Eng (eds.). 2000. *Where China Meets Southeast Asia*. Bangkok: White Lotus.

신돌식 외. 1995. 『인도네시아 문화의 전통과 변화』. 서울: 모듬사.

(2) 학위논문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사회경제적 동인.” 집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Doc,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ertation. Singapore: Robin Hood University.

(3) 학술지, 월간지, 계간지 등에 게재된 논문이나 기사

정해조 1998. “지역연구의 방법론(1).” 『국제지역연구』 2(2): 317-334.

Birch, Anthony H. 1978. “Minority Nationalist Movements and Theories of Political Integration.” *World Politics* 30(3): 325-344.

※ 권, 호 또는 volume, number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권(호), Vol(no)에 해당하는 숫자만 위와 같이 표시하고, 면수는 콜론을 찍은 다음 숫자만 표시한다.

(4) 편집된 책 속의 글

①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장노자. 1991.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필리핀의 경험.”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동남아의 국가와 사회』. 서울: 호박사. 210-235.

Cotton, James and Kim Hyung. 1996. “The New Rich and the New Middle Class in South Korea.” R. Robinson and D. Goodman (eds.), *The New Rich in Asia*. London: Routledge. 56-80.

②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정해창. 1993. “인간의 정체.” 『언어, 문화, 인간』. 서울: 고려원. 355-400.

③ 같은 편저 내의 많은 글이 본문에 언급될 경우에는 해당 편저의 완전한 문헌정보를 제공한 후, 각 저자의 글을 이에 관련지어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

Cohen, Paul T. 1993. “Order Under Heaven: Anthropology and the State.” Evans (ed.). 175-204.

Evans, Grant (ed.). 1993. *Asia's Cultural Mosaic*. London:

Prentice Hall.

Hellowell, Christine. 1993. "Women in Asia." Evans (ed.).  
260-286.

(5)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기사 및 칼럼

서경교. 1993. "태국 민주화의 교훈." 『중앙일보』 4월 8일.

Juoro, Umar.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2, p. 23.

(6) 인터넷 검색 자료일 경우 저자, 작성년도, 제목, 웹주소, 검색  
일자의 순으로 하되, 검색일자는 괄호 안에 둔다.

Clark, John. 2006. "China Threat." [http://atimes.com/atimes/  
printN.html](http://atimes.com/atimes/printN.html) (검색일: 2006.02.02)

## 한국동남아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8년 02월 02일

개정 2009년 06월 19일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한국동남아학회(이하 학회) 회원이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회원 이외에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학회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비회원(이하 비회원이라 함)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윤리규정 서약)

- ① 한국동남아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 ②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 ③ 한국동남아학회가 학술지 원고모집 또는 학술발표대회 기획안을 공고할 때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여야 하며, 비회원은 학술지 또는 학술발표 원고를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4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 제5조 (출판 업적)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6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제7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9조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 (공평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3조 (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5조 (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제3장 윤리위원회

제17조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 ①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동남아학회 편집위원이 겸임하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윤리위원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는 윤리위에서 제외한다.
- ③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남아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제4조 내지 제7조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또는 비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0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 또는 비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 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대한 윤리위원회의 보고나 제재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상임이사회는 제재 여부 및 제재의 내용 등 사후조치를 결정한다.
- ② 상임이사회가 제4조 내지 제7조를 위반한 회원 또는 비회원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단, 이들 각호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2.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3. 향후 일정 기간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 금지

4. 기타의 제재

- ③ 상임이사회가 제2항 제2호의 제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 ④ 상임이사회가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윤리위원회와 보고자 및 피보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3조 (윤리규정의 개정)

- ① 윤리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 ②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02. 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6. 19)**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24권 3호 (2014년)

2014년 8월 30일 인쇄

2014년 8월 31일 발행

발행인 박장식

편집인 이충열

발행처 한국동남아학회

(609-815)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A504호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한국동남아학회

tel 051-509-6648

fax051-509-6649

www.kaseas.org

kaseas12@gmail.com

ISSN 1229-6899

